

외환거래 편의 제고와 금융기관간 경쟁촉진 및 고객편익 증진을 위한 대고객 외국환중개 도입

- 「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」 11.10(금) 국무회의 의결 -

앞으로는 수출입기업 등 고객들이 금융기관과의 외환거래시 중개회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. 이를 통해 고객들의 외환거래가 편리해지는 한편, 금융기관간의 가격경쟁이 촉진되면서 소비자 편의도 높아질 전망입니다.

정부는 11.10(금) 제46회 국무회의에서 대(對)고객 외국환중개업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「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을 심의·의결했습니다. 이는 ‘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’ 및 ‘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’ 등과 함께 「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(’23.2월 발표)」의 핵심 사항*입니다.

* ①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(’23.10월 제도화 완료), ②對고객 외국환 중개업 도입, ③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(15:30 → 익일 02:00, ’24.7월 시행)

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 먼저, 기업 등 고객과 은행·증권사 등 금융기관들간 외환거래시 실시간으로 여러 금융기관의 환율을 제시하고, 주문 접수, 거래체결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‘대고객 외국환 중개업무’ 도입을 추진합니다. 앞으로 고객들은 대고객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보다 유리한 가격조건을 파악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. 이에 따라, 고객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, 거래 편의가 제고됨은 물론, 금융기관들의 가격경쟁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외환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안전장치를 내실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. 지금까지 천재지변·전시 등 긴급상황시 정부는 일방적으로 거래정지·자산매각 등을 지시만 할 수 있었습니다. 앞으로는 정부가 사전에 민간부문 등과 협력하며 대외충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권고·이행계획 제출 등 완화된 형태의 수단을 도입합니다. 또한, 외환시세 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사전 예방 등을 위해 시장교란 행위 금지 의무 조항을 별도 조항으로 분리합니다.

정부는 이번에 의결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외환시장 구조개선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.

담당 부서	국제 금융국 외환제도과	책임자	과 장	이준범 (044-215-4750)
		담당자	사무관	김민주 (kimminju@korea.kr)
			사무관	김용준 (kimyj1011@korea.kr)
			주무관	이승준 (mmnkk@korea.kr)
	국제 금융국 외화자금과	책임자	과 장	유창연 (044-215-4730)
		담당자	사무관	이동훈 (ldh5758@korea.kr)
	국제 금융국 국제 금융과	책임자	과 장	이차웅 (044-215-4710)
		담당자	사무관	이용준 (cjeye86@korea.kr)

- ① **(대고객 외국환중개업무 도입)** 現 체계에 따라 대고객 외국환중개 업무를 도입·관리하기 위해 개념, 거래상대방, 의무 등 규정
- (개념) 기재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기업 등 일반고객과 외국환은행·증권사 등 금융기관간 외환거래를 중개하는 업무* 및 회사
 - * 기존 금융기관간 중개업무는 '일반 외국환중개업무'로 명칭 변경
 - (거래상대방*) 일방은 은행간 시장 참여기관(외국환은행, 증권사 등), 다른 일방은 고객이며, 금융기관간 및 고객간 거래는 중개 불가
 - * 단, 일반/대고객 중개업무 상대방은 시행령에서 구체화(법률은 구분 근거만 규정)
 - (의무) 중개회사에는 기존과 같이 거래 적법성 확인 의무가 있으며, 고객보호를 위한 보증금 예탁, 보험·공제 가입 등 의무 부과 가능
 - (他 관련법령과의 관계) 소비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방지 등을 위해 「자본시장법」, 「금융소비자법」상 관련 조항 준용
- ② **(위기대응수단 개선)** 시장개방 등 경제환경 변화에 맞춰 개선
- 대외건전성 상황에 따라, 사전에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단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완화된 수단 도입(권고 → 이행계획 → 명령)
 - 위기시 한은 등에 보관·예치·매각할 외환집중 대상 확대*
 - * (현행) 지급수단, 귀금속 → (개정) 증권, 파생상품 추가
- ③ **(시장교란행위 대응 강화)** 시세조작 등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현행법상 '업무상 의무'로 규정되어 있는 의무를 별도 조항화
- * (현행) 제10조(업무상 의무) 2항 → (개선) 제10조의2(시장교란행위의 금지)